

서울고등법원

제 16 민사부

판 결

사 건 2013나2014994 부당이득금반환
원고,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.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
담당변호사 오대호

피고, 피항소인

1. 주식회사 하나은행
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-1
대표이사 김종준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
담당변호사 정승진
2. 주식회사 국민은행
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-1
대표이사 민병덕
3. 중소기업은행
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
대표자 은행장 조준희
4.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
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

대표이사 영국인 리차드힐

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경지

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7. 4. 선고 2012가합85576 판결
변 론 종 결 2013. 12. 17.
판 결 선 고 2014. 2. 6.

주 문

1.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별지 2 청구내역표 기재 각 피고는 같은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0행 "이 사건 계약조항"을 "이 사건 선택형 비용부담조항"으로, 같은 면 제15행 "1 내지 4"를 "2"로, 제15면 제15행 "5.126"을 "51.26"으로 각 고치고, 별지 1 내지 4 목록을 삭제하며, 별

지 5 청구내역표를 별지 2 청구내역표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,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	판사	최상열	<u>최상열</u>	
	판사	이호재	<u>이호재</u>	
	판사	정총령	<u>정총령</u>	